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7. 9 선고 2019가소33085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량

피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진

변론종결 2020. 6. 11.

판결선고 2020. 7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2,531,600원 및 2019. 11. 8.부터 2019. 12. 12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판사 배지호

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